

日本 水産業 成長의 綜合分析 (II)

朴 鍾 國*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Growth of Japanese Fisheries

Park, Chong-Guk

目 次	
I. 서 론	IV. 수산경영의 변화
II. 일본수산업의 산업발전분석	1. 수산경영체의 분류
1. 수산업이란 무엇인가?	2. 어가 경영
2. 어업발전과 그 한계	3. 중소수산기업의 경영
3. 수산자원의 보존과 이용의 모순과 계항	4. 대형수산기업의 경영
4. 어업발전의 기타 제약요인	V. 일본 수산경영정책의 전개
5. 수산업발전의 방향	1. 수산정책에 대하여
6.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치의 변화	2. 수산경영정책의 역사적 전개
III. 수산경제의 흐름	3. 어업구조 개선정책
1. 수산물 소비생활의 변화	4. 수산금융정책
2. 수산물 수급	5. 유통·가격정책
3. 수산물 무역	6. 어업재해보상제도
4. 수산물 유통	VI. 결 론
5. 수산물 가격	참고문헌
	Summary

IV. 수산경영의 변화

1. 수산경영체의 분류

수산경영체를 분류하는 방법은 조사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즉 어업센서스에서는 경영체의 계층별로 연안어업층, 중소어업층, 대규모어업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업백서에서는 어업 규모별로 연안어업, 중소어업, 대규모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어업·양식업생산통계에서는 어업부문별로 연안어업, 근해어업(일본에서는 沖合漁業이라 함), 원양어업으로 구분하고,

* 수산청 사무관

어업경제조사보고서에서는 경영형태별로 어가와 기업체(중소어업체, 대규모어업회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수산업의 경영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업과 기업으로 나누기도 한다. 생업은 가계유지를 위하여 자가노동력에 의존하는 어업경영이며, 기업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하는 어업경영이다. 생업의 경영규모는 경영자와 그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에 한정되므로 그 자본의 대소에 관계없이 가족의 노동력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경영규모를 한계로 한다. 이점에 있어서 생업어업의 범위를 업종별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자본력이 허용하는 한 조업규모를 확대하여 고용노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어느 정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생업과 기업을 정태적으로 본다면 경영규모의 차이만으로 양자의 본질적 상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나, 동태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 의존하는 조건이 한쪽은 노동력, 다른 쪽은 자본력에 달려 있다²⁵⁾. 기업경영부문은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대장성 법인기업통계연보)과 사용어선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어업센서스) 및 이를 혼합하여 분류하는 방법(농림수산성, 어업경제조사보고)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업경제조사보고에서는 기업체를 자본금 1억엔 이상을 대규모 어업회사라 하고, 사용어선규모가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어선을 사용하는 경영체를 중소어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다(<表 13> 참조).

<表 13> 重層的 漁業構造 (1978年)

經營體數 區 分	漁業粗收益 (億円)	經營體數 (業體)			
		計	個人	會社	協同經營
合 計	21,826 (100%)	217,734 (100%)	210,123	2,472	5,139
沿岸漁業層	9,003 (41.2%)	206,796 (95%)	201,916	830	4,050
中小漁業	10,398 (47.6%)	10,730 (4.9%)	8,102	1,462	1,166
大規模漁業	2,594 (11.8%)	208 (0.1%)	15	181	12

資料：長谷川章, 日本漁業의 構造, 農林統計協會, 1981, pp. 8, 13. 漁獲粗收益은 漁業經濟調查報告에서 經營體數는 漁業센서스에서 作成.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산기업을 중소기업과 대형기업의 둘로 나누고 그 기준을 증권시장의 주식상장여부(자본금 10억엔 이상)로 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자금조달형태를 비롯하여 경영이 질적으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 정부정책지원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의한 일본의 대형수산기업은 동경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25) 新川傳助, 水産經濟研究, 恒星社恒星閣, 1968, p. 51.

大洋漁業, 日本水産, 日魯漁業, (株)極洋水産, 寶幸水産, 報國水産의 水産 6社에 한정되고 있다.

2. 어가 경영

2.1 경영의 특징

어가경영은 가족노동을 주체로 어업을 경영함으로써 그 어업소득을 가득하나 그의 잉여노동 등 가족 노동의 일부를 타사업소득이나 타산업의 노임 수입을 위하여 종사케 함으로써 어가소득이 형성된다. 곧 어가소득은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이라는 종합적인 소득에 의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것이므로 어가는 생업경영단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가경영의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안어업에 있어서 지배적인 생산주체를 이루고 있다.

둘째, 가계와 어업의 자본계산이 미분리상태에 있다. 즉 어업회계에 있어서 ① 어업수지는 농업, 소매업, 임금노동 등의 겸업수지 및 가계와 일체화되고 있어 어업수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② 감가상각비, 종사가족의 자가노임 등의 내부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③ 어업순이익, 즉 자본계산이 내용상으로는 존재한다고 하여도 형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가경영에서는 어업자본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업수지를 겸업수지와 가계지출을 구분함으로써 어업소득을 명확히 하고 감가상각비등 회계상의 내부계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²⁶⁾.

셋째, 어가경영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속에서 잔존할 수 있는 것은 연안에서 어가가 생산하는 중고급어에 대한 수요가 크고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며, 생산기반인 연안어장이 어업권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2.2 경영의 변화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수산물 수요는 생선지향화, 고급화, 다양화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선도가 좋고, 다종다양한 중·고급어를 주로 생산대상으로 하는 연안어가어업에 유리한 환경조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어선어가에서의 소형경량화된 선박기기의 도입 등에 의한 기술진보와 양식어가에서는 종묘생산 등의 기술진보를 배경으로 견실한 수요에 따른 어가상승에 의하여 어가소득이 증대되어, 타산업 종사자와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됨으로써 어가경영의 황금기를 맞이하였다고 한다(<表 14> 참조).²⁸⁾

통계상으로 보면 어가경영체수는 1970년대 초반부터 감소경향이 나타나 어선어가에서는 무동력선의 동력화에 의해 동력선층이 증가하고, 1~3톤층의 감소와 1톤층 미만, 3~5톤층, 5~10톤층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양식경영체수는 김, 미역 경영체 등의 감소에 의해서 총수

26) 八木庸夫, 漁家經營論, 北斗書房, 1979, p. 185.

27) 海老原宏(共),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p. 192.

28)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p. 91~92.

<表 14> 世帶員 1人當所得 (單位：千円)

年度 區分	1960年	1965年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
漁家平均	72	151	294	720	1,096	1,267
漁船漁家	—	138	289	707	1,061	1,211
養殖漁家	—	185	302	732	1,122	1,448
勞働者世帶	86	193	358	760	1,111	1,409

資料：水產統計指標.

에서는 감소경향을 볼 수 있으나 양식품종의 다양화가 진전되었다.

200해리 시대에 들어서는 어업을 둘러싼 환경조건이 크게 변화하여 어선어가에서는 3톤 미만층이 감소되고, 3톤 이상층은 증가되는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5톤 이상은 1960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양식경영체수에서는 김양식체수가 196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경향에 있다. 굴과 진주양식체수에서는 증감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담보상태에 있다고 하겠다(<표 15> 참조).

<表 15> 漁家漁業 經營體數의 推移 (單位：經營體數)

	1960年	1965年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
1톤未滿	*	36,629	44,358	47,566	45,142	42,973
1~3톤	*	59,468	57,693	52,808	46,118	41,145
3~5톤	10,903	15,144	20,816	28%143	34,366	36,253
5~10톤	5,712	5,752	7,051	9,041	11,865	12,224
김 양 식	41,124	55,726	48,585	31,751	24,162	17,264
굴 양 식	4,258	4,208	3,484	3,382	4,273	3,769
진주양식	2,715	4,095	3,380	1,833	1,794	1,969

資料：水產廳, 水產統計指標.

* : 1960년의 3톤 미만의 경영체수는 전부 77,330업체이다.
3~5톤層과 5~10톤層이 增加一邊倒인 것이 특징이다.

<表 16> 漁船漁家の 噸數 階層別 漁家所得 (單位：千円, %)

區分 \ 年度	1965年	1970年	1975年	1980年	1985年
1톤 未滿 所得 漁家所得率*	**	1,243 50.0	2,738 46.5	3,945 41.2	4,228 34.7
1~3톤 所得 漁家所得率		1,432 60.7	2,953 55.9	4,485 49.1	4,470 45.1
3~5톤 所得 漁家所得率	907 73.1	1,885 79.4	3,390 67.4	5,048 64.9	5,117 54.8
5~10톤 所得 漁家所得率	1,074 77.0	2,585 87.1	5,289 75.6	6,141 69.6	6,255 62.7
勤勞者世帶所得	797	1,391	2,877	4,254	5,338

資料：水產統計指標.

* : 漁家所得率 = 漁業所得 / 漁家所得.

** : 3톤未滿 所得 769千円, 漁業所得率은 62.5%이다.

전어가평균의 어업의존도 즉, 어가소득율(어업소득/어가소득)은 1960년대 후반 고도성장기에는 6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전업적 어업경영이 확립되는 듯이 보였으나, 1965년도의 70%를 고비로 하여 1970년도 이후에는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톤급 이하의 계층에서 현저한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50%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점차 어업의존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表 16> 참조).

3. 中小 水産企業의 經營

3.1 經營의 特徵

중소수산기업은 일반중소기업과는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수산업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2중구조 외에 漁家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중 중소수산기업은 독점적 성격을 갖는 대형수산기업에 대해서는 보호·육성을 주장하고, 영세어가에 대해서는 개인선주의 법인화 등 구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중소수산업은 수산물공급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중추적인 수산경영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수산기업은 일반중소기업이 구비하고 있는 몇가지의 특징, 즉 자본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자금조달면에서의 限定性, 경영활동의 지역성 등 공통적 특성에 추가해서 어업경제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⁹⁾.

중소수산기업에 있어서 회사경영은 同族的·形式的인 것이 많고 내용적으로는 개인경영과 큰 차가 없는 상태에 있으며 세금대책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형식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법인화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경영합리화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은 드문 상태에 있다. 그리고 자금조달면에 있어서 대기업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이나 사채의 발행도 전혀 없으며, 오로지 當舖신용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자체에서 축적한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금이나 외상매입금이 통상 필요자금의 80~90%에 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소수산기업의 경영은 대형수산기업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어업부문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어업층은 업종의 다양성, 지역적 분포, 계층의 중층성 등 多種多樣的 經營의 공존에 의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은 복잡하고 다원적이다. 즉 경영규모면에서 자본금 2백만엔부터 10억엔까지이며, 사용선박 톤수면에서는 10톤으로부터 1,000톤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상층과 중·하층과의 계층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 있다.

업종별 생산활동의 범위에서 보면 대형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연안어업으로부터 저인망어업, 선망어업, 봉수망어업, 일본조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 연승어업 등의 근해·원양어업에 이르고 있으나 개별회사의 경영활동은 어장과 판매시장 등의 제약에 의해 일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중소수산기업경영의 명료한 특징은 타인자본의존율이 지극히 높은 경영상태에 있다고

29) 海老原宏(共),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pp. 167~168.

해도 좋을 것이다. 곧 타인자본율이 100%를 넘는, 즉 차입금이 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이들 어업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表 17> 참조)³⁰⁾.

<表 17> 中小漁業經營體의 自己資本比率 推移

년 도	1965	1970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자 기 자 본비율	20.4%	10.7%	6.6%	7.0%	3.4%	3.5%	1.1%	0.2%	-0.3%

資料：農水省, 「漁業經濟調查報告」, 企業體의 部.

일본의 중소수산기업의 수익구조를 보면,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는 어업자재가격의 상승율이 어가상승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 어업성장의 메카니즘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3년이후의 저성장기에 있어서는 어업경영의 위기로서 곧 어업자재가격의 상승율이 어가상승율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그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어업경영의 수익성면에서 보면, 고도성장기에는 증가, 저성장기에는 감소경향이 나, 어업이익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는 적자였다가 1985년부터 흑자로 반전되고 있다(<表 18> 참조).

<表 18> 收益性分析(漁船漁業平均) (單位：千円, %)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漁業收入	33,796	52,664	101,261	134,152	134,562	133,079
漁業支出	29,076	44,606	96,251	135,914	132,316	127,212
漁業利益	4,395	7,965	642	-3,219	672	3,869
營業利益	3,845	8,352	2,017	-1,489	2,563	6,675
經常利益	404	3,780	101	-2,267	1,029	5,865
當基利益	1,661	3,641	-586	-2,189	1,275	4,839

資料：水産統計指標, 漁業經濟調查報告.

1970년대 후반부터 1985년까지의 이익율은 마이너스 또는 극히 저조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중소수산기업들은 차입금을 늘려가면서 저조기에도 존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금순환을 원활히 한 때문이며 이것이 적자경영속에서 일본의 중소수산기업이 살아 남는 한 요인이었다고 한다³¹⁾.

그리고 1985년 이후에는 어업수입과 지출이 다같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어업지출의 감소가 어업수입의 감소를 대폭 상회하는 데서 수익개선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노무비, 감가상각비 등 어업지출이 또다시 증가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경영악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表 19> 참조).

대체로 어업의 수익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획고이며, 다음에는 조업 경비, 어선의 감가상각비, 임금(보합제), 이자비용 등이다. 따라서 어업은 본질적으로 극히 높은 부가가치율을 갖고 있지만 전술한 제비용 그중에서도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높은 데서 흥어기에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평소 어업이익이 내부에 축적되어 있지 않고

30)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 145.

31) 上記書, p. 160.

日本 水産業 成長의 綜合分析

<表 19> 主要經濟 構成變化 (單位: 千円, %)

區分\年度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漁業支出 合計	30,303 (100)	47,218 (100)	96,251 (100)	135,914 (100)	132,316 (100)	127,212 (100)
勞務費	11,883 (39.2)	19,307 (40.8)	37,992 (39.4)	47,396 (34.8)	47,118 (35.6)	48,699 (38.3)
油代	2,414 (7.9)	3,329 (7.0)	14,036 (14.6)	28,159 (20.7)	24,790 (18.7)	12,603 (9.9)
減價償却費	5,074 (16.7)	8,891 (18.8)	12,626 (13.1)	14,954 (11.0)	14,997 (11.3)	15,834 (12.5)

資料: 水産統計指標, 漁業經濟調查報告(企業體의 部).

외부(어업의)로 유출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³²⁾

3.2 經營의 變化

1973년 오일쇼크 이전 일본의 중소어업 경영조건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그것은 국제적인 어장규제가 매년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어가의 상승과 유류를 비롯한 어업자재가격의 안정에 의해 어업경영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성력화 기계의 활발한 도입으로 인건비 절약에서 코스트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중소어업경영자간의 과당경쟁은 어선의 투자를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왕성한 투자의욕에 의하여 차입금의 증대를 유발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일본의 중소수산업은 그러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과당경쟁, 과잉투자의 구조와 타인자본 의존형 체질이라고 하는 불건전하고 취약한 경영기반을 형성해 오는 한편, 근대적 노사관계의 확립 등 경영근대화·합리화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목되는 것은 1978년의 과잉투자의 실태를 경영지표로부터 살펴보면 어업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자본장비율이 2배나 높은데도, 노임율도 따라 높은 것은 어업경영에 있어 높은 자본장비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영수지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가상각율이 타산업의 5배 이상인 점에도 있다. 이것은 어업경영의 감가상각기간이 다른 업종(산업)에 비하여 단기간이라고 하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表 20> 참조).

<表 20> 生産費에 차지하는 勞賃과 減價償却費의 比率 (1978年)

區分	資本裝備率	減價償却費比率	勞賃比率
中小資本漁業	408万円	14%	40%
中小企業製造業	100~200万円	2.5%	24%

資料: 轉機에 선 日本水産業, p. 112에서 引用.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업에 있어서 과잉투자를 유발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때, 그것은 ① 과당경쟁의 격화, ② 어업기술의 향상, ③

32) 平澤豊, 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73, p. 126.

기타 투자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당경쟁의 요인은 연안일대에 널리 산재하고 있는 어가의 신규참여, 다획증산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중소기업이 이용가능한 자원 및 어장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어업의 기술적인 요인은 다획증산지향을 위한 어선의 대형화, 고마력화,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한 고도기술의 도입, 신어장 개척 및 어법전환에 의존된다.

기타투자요인으로서 고도성장기에 볼 수 있는 어가의 상승, 수요의 증대, 수산물시장의 확대, 정책자금의 조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해서 아니 될 것은, 첫째, 어업금융면에서 자기자금이 없어도 신조선 건조가 가능하였고(<表 21> 참조), 둘째, 어선의 상각방법과 내용년수가 어업경영의 이익을 적게 하는 대신 어선투자를 활발히 하도록 하였고, 셋째,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경영문제 해결을 위하여 깃가림제(보합제) 임금하에서는 선원의 新船선호경향에 따라 투자가 전개된 점이라고 하겠다.

<表 21> 漁船 代船建造의 場合 資金調達

全建造費 100%	金庫·公庫·資金 75%	自己調整分 25%			
		造船所 金融 10~20%	自己資金 5~15%		
			被代船賣却利益 0~5%	稼働益金 0~5%	眞의 自己資金 0~5%

資料: 轉機에 선 日本水産業, p. 150에서 引用.

다른 면에서는 200해리 시대에 들어 중소수산기업은 어장축소, 魚價정체, 原價상승이라고 하는 3重苦에 직면해서 여러가지 경영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경영수지내용의 악화로 이익율이 1978년부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적자기조로 전락하였고, 둘째, 생산성의 저하로 어로체당 어획량과 어로체의 출어 1일당 어획량의 저하와 노동생산성의 신장율이 저하되었다. 셋째, 종전에 중소어업 수지문제의 중심은 고용노임과 감가상각비, 유류비 및 경비 등이었으나 지금은 그외의 경상경비가 크게 늘어나 그 경상경비 전반이 관리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노무문제 극복의 곤란성이다. 곧 선원감소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고령화 등 임금수준 이외의 여러 사회적 요인이 엉켜 신규선원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경영문제에 대하여 감선, 省에너지형 어업전환,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 정책 등 과잉자본의 삭감과 개별경영 생산을 풀(Pool)제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노력 및 공동계산제 등 조업방식의 개선 등 여러가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는 있지만 금후 중소어업의 안정적 재생산을 전체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재편성의 방향은 모색하기가 기본적으로 곤란한 실정에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소어업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중·하층의 생산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고, 둘째, 생산력경쟁은 동일업종 내부보다는 타업종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동일업종내에 있어서는 경영규모에 맞는 조업방식, 경영방법의 추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³³⁾.

33) 長谷川彰,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pp. 155~156.

4. 大型 水産企業의 經營

4.1 經營의 特徵

대형 수산기업 경영은 어업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경영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중 첫째는 경영규모의 巨大性이다(<表 22> 참조).

<表 22> 大型水産企業資本規模의 概要 (1987年)

會社	資本金	賣上高	従業員數	創立年	經常利益	船舶數
大洋漁業	150億円	5,293億	3,988名	1943年	45.4億円	122隻
日本水産	193	4,663	4,034	1943	64.0	58
日魯	82	2,108	2,249	1914	2.1	15
極洋	57	1,887	1,181	1937	5.5	7
寶幸	30	1,102	1,174	1946	27.8	7

資料：東洋經濟，會社四季報，各社有價證券報告書。

둘째는 대형 수산기업의 주요한 어업생산은 원양어업으로서 독점자본어업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모선식어업이나 북양트롤어업 등과 같이 특정어장이나, 어업허가를 독점하여 독점이윤설정의 원천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는 어업이외에 가공, 특히 상사분야(상품부문)의 겸업비중이 대단히 높다(<表 23> 참조).

<表 23> 資本金 10億 以上 水産會社の 賣上構成 (단위：%)

賣上構成	1970	1976	1980	1985
漁業部門	36.6	20.6	13.6	11.7
製氷·冷凍	1.4	1.3	0.4	0.5
加工部門	14.3	12.7	11.6	14.0
商品部門	44.2	62.6	71.2	70.1
其他	3.5	2.8	3.2	3.7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水産廳，水産統計指標；農水省，漁業經濟調查報告。

넷째는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해외에 활발한 자본수출을 전개하고 있다(<表 24> 참조).

<表 24> 水産企業그룹의 實態 (1985年) (단위：業體數)

區分\業體	大洋	日本	日魯	極洋	寶幸	報水
計	31	48	18	11	9	2
漁業部門	5	4	0	3	1	2
製氷冷凍	2	8	0	1	0	
食品加工	8	7	10	2	2	
商品部門	3	6	5	1	3	
其他	15	23	3	4	3	
海外投資會社	29	23	11	3	9	3

資料：週刊東洋經濟，日本企業그룹，海外進出企業總覽，1991.

다섯째는 자본·자금의 조달방식이 다르다. 중소수산기업의 자본금은 스스로 출자하고, 차입금은 漁協을 기반으로 해서 일부 지방은행에 의존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대형 수산기업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의 전국적 흡수, 都市은행이나 정부기관 계통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4.2 經營의 變化

대형 수산기업의 경영은 1960년대 이후 원양어업 독점체제로부터 내외관련 산업부문으로의 다각화와 해외산업, 중소기업 계열화라고 하는 일관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해리 시대에 들어서도 한동안 脫어업화라고 부를 정도로 한층 심화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수산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진출과 수산업의 本業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제도수정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경영의 변화를 1973년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고도성장기와 그 이후의 저성장기 및 200해리시대로 나누어 살펴볼 때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는 대형 수산기업은 자본금, 매상금액, 기업순이익에 있어서 상당히 급tempo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25> 참조).

<表 25> 高度成長期에 있어서 大型水産企業의 動向

年 度	資 本 金	賣上金額	經常利益
1960	217億円	1,310億円	42億円
1965	403	2,461	77
1970	403	4,431	122
1973	408.5	7,055	213
73년/60년	約 2 倍	約 5.4 倍	約 5.5 倍

註：資本金, 賣上金額, 經常利益은 大型 5社의 合計數値임.

이것은 ① 원양어업의 독점적 지배, ② 관련산업부문에의 진출과 통합경영, 그리고 ③ 자본수출의 적극적인 전개에 의한 것이다.

① 에 있어서는 특히 명태·수리미생산이 모선식 저인망, 북방트롤어업의 독점적 조업에 의해 극에 달했고, 한편 모선식 어업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큰 어획부문을 중소기업에 하청을 준다든지 系列化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② 에 있어서는 국민식생활의 변화에 대응해서 원료확보의 유리성으로부터 수산회사의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식품부문에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로 이외의 부문에서의 매상고의 증가와 더불어 가공, 유통, 기자재제조, 운수, 서비스 등 관련산업부문의 계열기업의 확대로 어업회사로부터 종합식품회사, 일반商事회사로서의 체질을 갖추게 되었다.

③ 에 있어서는 일본어업의 높은 기술수준과 최대의 판매시장이라고 하는 잇점을 살려 새우트롤, 저인망어업 등에 있어서 어업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에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1973년을 전기로 저성장기와 1977년부터 본격적인 200해리 시대를 맞이하여 대형

수산기업의 경영은 오일쇼크에 동반한 경비상승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형 수산기업은 고도성장과정에서 자본의 고축적과 종합식품회사로의 통합체제에 의한 경영의 탄력성으로 충분히 대응하고, 신속한 경영체제의 정비에 의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였다. 구체적인 체제정비의 방향은, ① 어로부문에 있어서는 원양어업부문의 재편성과 중소기업의 계열강화, ② 가공유통부문에 있어서는 냉동식품 수입수산물의 취급 확대, ③ 자본수출면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추가해서 구미선진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200해리시대 이후의 대형 수산기업의 경영은 종래의 수입 및 이익증대의 기초가 일변하고 이에 대응하여 상차부문의 강화나 수익원의 다양화를 도모해 왔으나, 그다지 기대에 부응한 효과를 올리지 못하고 매상고의 장기둔화, 이익폭의 정체로 실질적인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다³⁴⁾.

최근의 경영적 특징은 다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탈어업화의 경향이다. 즉, 어로부문의 감량경영으로부터 전체의 자산규모를 축소해서 사용총자본의 회전을 빨리하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어업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① 報業守城에 입각한 선박설비와 요원의 삭감, 투자의 축소 및 집약화를 통한 합리화, ② 신어장 개척, 해외산업방식의 재편성을 통해 어업독점 매리트(Merit)를 살리는 한편, 참다랑어 연승어업은 연어양식, 연안양식어업 등 수익성이 높은 업종에 중점투자, ③ 円高와 무역자유화의 여건아래 국제적인 原魚조달활동의 다양화, 특히 북미 현지 생산체제구축과 해외영업망의 확충이라고 하는 해외산업의 다국적화를 들 수 있다. 둘째의 특징은 수산과 관련성을 중시하는 경영다각화이다. 즉 가공이나 타업종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부문의 확충에 의해 이익율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종래의 경영다각화 전략은 사탕, 축산물, 해운, 유제품 등 주력사업인 수산업과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련성을 중시하여 관련부문간의 시스템 에너지 효과의 상승을 도모하면서 본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형 수산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다각화사업을 구분하면, ① 양식어업, 어업합작사업, 어로공동사업, ② 건강식품, 의약품, 바이오산업, 정보산업, ③ 외식산업, 통신판매사업 등의 세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사업은 매상고 비중이 아직은 저조하나 수산사업의 세가지 기능인 어업, 가공, 유통활동을 보완하는 관련산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V. 일본 수산경영정책의 전개

1. 수산정책에 대하여

1.1 生産政策과 經營政策

수산정책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수산업이라고 하는 산업활동에 대한 공적인 개입의 총칭이

34)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p. 116~117.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산정책은 어업이라고 하는 산업활동의 특수성에 입각한 독특한 정책분야를 갖고 있으면서 농업정책, 산업·통상정책, 해양개발정책, 식품위생정책 등 일반 국민 경제정책과 광범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을 고찰해 나갈 경우에는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반경제정책과의 관련을 고려해서 그 정책 목적과 정책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수산정책분야를 여러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1960년대 이후의 일본수산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산업활동의 측면에서 그 정책을 크게 생산정책과 경영정책 두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① 생산정책은 무엇보다도 어업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어업생산을 둘러싼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면 그 범위는 극히 넓으며, 어업정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의 생산정책을 다시 둘로 나누어 보면 그 하나는 적절히 자원을 관리하는 어업관리정책이고, 또 하나는 연안어장의 정비, 수산증·양식 및 재배어업의 추진, 수역환경의 보전, 신어장의 개발 등 자원가입량을 증대시키고 수산자원의 생식환경을 개선하는 협의의 생산정책이다. ② 경영정책은 건전한 개별경영의 확립을 위한 제반시책으로 일반적으로 개별경영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조건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영자가 그 경영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또한 수산활동은 자금조달을 비롯하여 어획물의 생산, 가공, 판매, 수익 배분 등의 일련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대책도 광범위한 정책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어업생산정책, 어업관리정책은 수산경영의 안정 및 개선에 상당히 관련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수산경영의 안정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산경영대책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보다 수산경영에 밀접한 정책분야로서는 어업구조 개선정책, 수산금융정책, 유통·가격정책, 재해보상정책 등이다.

이러한 경영정책은 주로 경영기반이 약한 어가경영, 중소자본어업경영을 대상으로 하고 대자본어업경영은 독자적인 힘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영정책의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한정된 불가분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취급하기로 한다. 또 일본에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속에서 국가가 개별경영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산경영이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져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³⁵⁾.

1.2 수산정책 상호간의 모순관계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목표를 세워, 그것에 알맞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또 그 정책수단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책도구를 선정·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업생산의 증대라고 하는 목표가 설정된 경우, 정책수단으로서는 수산자원의 증식, 신어장의 개발, 어장의 개량조성, 기술의 개량보급 등을 들 수 있고, 그 정책도구로서는 재정투융자라고 하는 경제적 도구, 어업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제도적 도구, 인허가 등 행정적 권한을 활용하는

35) 清光昭夫(共), 水産政策論, 恒星社厚生閣, 1987, p. 168.

지도적 도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취한 정책수단이 다른 정책목표에 대하여, ①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 ②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상호 대립적인 관계를 낳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③의 경우이다. 즉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다른 정책목표를 희생시키는 경우이다. 정책목표의 설정이 다양한 가치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이상 정책상호간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수산정책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정책상호간에 모순관계가 생기기 쉽다³⁶⁾.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하자. ① 수산물 안정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에의 기여, ② 어민소득의 향상, ③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의 경우에 그 정책수단으로서, 어업생산의 효율화 등 증산정책은 대체로 ① 과 ② 에는 좋은 영향을, ③ 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며, 인플레이하의 고어가정책은 ② 에는 좋은 영향을, ① 과 ③ 에는 대체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수입 개방정책은 ① 과 ③ 에는 대체로 좋은 영향을, ② 에는 나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산정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책수단과 목표상호간의 모순관계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건전한 수산경영체의 육성이라는 정책수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산경영체라고 하는 산업활동의 주체가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나 그것은 소득의 향상, 자원관리를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특히 수산경영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산업의 유지, 나아가서는 사회안정의 관점에서 또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경영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의 수산정책은 건전한 수산경영체의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정책, 재정금융지원정책 등은 개별기업의 경영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또한 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이라기 보다는 산업유지라고 하는 소극적 정책의 성격이 농후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효과는 단기간에 부분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전술적 운영보다도 장기적으로 산업전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수산경영정책의 역사적 전개

1945년 이후 일본의 수산정책은 전후부흥기, 고도성장기, 200해리시대의 삼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2.1 戰後復興期

첫단계는 1945년 종전 직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의 수산업의 부흥기이다. 이 시기에는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고 맥아더 라인이 철거되어 그 결과 「연안에서 근해로, 근해에서 원양으로」라고 하는 슬로건(Slogan) 아래 어업전환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당시 제정된 법령으로서는 어업전환정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

36) 上記書, p. 6.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본에 대한 재정융자기관인 農林漁業金融公庫 設置法(1952년)이 제정되고, 또한 같은 해에 中小漁業融資保證法이 제정되는 등 중소기업자에게 재정자금의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한 조치였다.

2.2 高度成長期

둘째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소위 어업의 고도성장기이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 중소기업의 생산력이 확충되는 한편 콩치, 오징어 등의 다획성어종의 어획변동이 커짐에 따라 짧은 어기에 일시에 대량으로 양육되어 어가가 폭락하여 어업경영을 압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일시적으로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조정기구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어업생산조정조합법을 1961년에 제정하였다. 또한 어가유지를 위한 조정보관사업이 구상되어 어가안정기금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에 의하여 그후 어가가 상승되었으므로 마침내 1968년에는 어가안정기금법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어업경영이 악화되자 다시 그에 대처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어획물공급 조정보관사업이 부활되었으며, 1976년에는 재단법인 어가안정기금이 설치되어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계통공급단체에 의한 조정보관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책도 강구되었다. 이 사업은 그후 정어리, 고등어, 참치, 김, 미역, 냉동수리미 등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어업과 타산업간의 격차와 어업내부에 있어서 대자본, 중소기업, 어가 등 어업경영체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다수 영세어가를 중심으로 한 연안어업 및 경영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어업에 있어서 종사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제2차산업 종사자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졌다고 한다. 1960년 농림어업기본문제조사회가 제출한 「漁業의 基本問題와 基本對策」에서 보면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균형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는 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어업의 근대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것이 기본적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1963년 沿岸漁業等振興法이 제정되어 어업구조 개선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의 구조개선정책은 생산성향상보다는 타산업과의 소득균형을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서 漁家安定資金의 재정융자제가 시행되는 등 전국연안지역별로 경영근대화 대책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7년에 이르러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중소기업 경영근대화의 촉진을 위한 中小漁業振興特別措置法이 제정되고, 1969년에는 영어자금조달을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자본장비의 고도화와 경영근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漁業近代化資金造成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어업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農林中央金庫 등 水協系統金融기관이 대부하는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대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차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안어업진흥법의 제정 후 10년이 지난 1973년, 연안어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소득과 거의 같은 수준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연안어가 소득의 증대는 어업생산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에 의한 것보다도 어가상승에 의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2.3 200海里時代

셋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수산경영은 대단히 심각했으며, 이 시기를 2백해리 시대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이 2백해리 시대는 이 2백해리가 자국화로 정착되고, 1985년 이후에는 田高의 진행과 더불어 어업의 국제화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어가는 시대라 하겠다. 이 시기의 중점시책으로는 오일쇼크, 구조개선, 감선 등에 대응하는 경영안정대책을 들 수 있다. 근것론 주로 긴급용자지원에 의해 경영파탄을 회피하고자 하는 대중적 정책에 의존하였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어려운 정세속에서 어업의 재건정비를 기할 목적으로 1976년 중소어업진흥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에 漁業再建整備特別措置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어업경영이 곤란하게 된 중소어업자에 대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고정채무의 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구조개선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업의 재건·정비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후 1983년에 어업에 있어서 성에너지화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약간의 개정이 추가되어 왔으나, 이 법은 당면 어업경영대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기초하여 민간자금을 原資로 하는 긴급용자자금이 처음으로 설정되어, 경영안정자금, 유류대책자금, 국제규제관련자금, 구조재편자금, 경영재건자금 등 다양한 자금의 용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77년에는 2백해리시대의 어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가공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공급사정과 수산가공업의 무역사정에 의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산가공업의 시설개량에 필요한 자금대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약칭 수산가공시설자금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1988년까지의 한시적인 법이었으나 1993년까지 연장조치되고 자금내용의 확충을 꾀하고 있다.

한편, 200해리시대에 들어서 일본 국민의 식탁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고급어개류의 공급처인 연안어업의 진흥을 기하는 것도 한층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안어업의 현황은 가족경영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영세어가가 많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자력에 의한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 곤란, 소형어선에 의한 해상작업의 위험성, 어촌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점, 젊은 후계자의 확보곤란 등이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안어업종사자가 자율적으로 경영과 생활 등을 개선하고, 또한 어업 후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연안어업종사자에 대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지방정부가 대부하고 이차보전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조성·지원하는 연안어업 개선자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곧 1979년에 제정된 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の 경영개선자금, 생활개선자금, 후계자양성자금의 세가지 자금을 공급함과 아울러 필요한 기술보급 및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수산경영정책과 관련한 전후 일본의 주요 수산진흥법령을 년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952年：農林漁業金融公庫法
- 1952年：中小漁業金融保證法
- 1961年：漁業生産調整組合法
- 1961年：魚價安定基金法
- 1963年：沿岸漁業等振興法
- 1964年：漁業災害補償法
- 1967年：中小漁業振興特別措置法
- 1969年：漁業近代化資金造成法
- 1976年：漁業再建整備特別措置法
- 1977年：水産加工施設資金法（略稱）
- 1979年：沿岸漁業改善資金助成法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일본의 수산정책은 1945년 이후 전후 부흥기에는 어업생산정책, 증산정책이 중심이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기에는 연안어업 구조개선 사업을 계기로 점차 경영정책으로 그 비중이 옮겨졌으며, 1970년대 이후의 200해리시대에는 경영안정정책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어업구조 개선정책

어업구조개선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알기 쉽게 수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곧 연안어선어업의 경우에 그 대상자원을 R , 어획량을 C , 그 어획물이 판매된 경우에 소득을 I 라 하고, 경영체의 수를 N 라고 할 때, 그 경영체 평균소득인 I/N 를 높이는 정책이 어업구조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영체의 평균소득 I/N 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① 자원 R 을 증가시키는 조치로 어장개량조성, 어초설치, 증식시설설치,
- ② 어획량 C 를 증가시키는 조치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어장이용방법의 전환과 일정한 어장범위에서 척수조정 및 어로장비 근대화,
- ③ 소득 I 를 증가시키는 조치로 어획물의 가공처리 및 부가가치향상,
- ④ 영체수 N 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영세업체의 합병·통합, 영세어가의 전업 등을 들 수 있겠다.

위와 같은 방법론에서 볼 때 어업구조 개선정책은 이러한 서로 다른 각각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최종목적인 경영체 평균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일본에 있어서 이러한 연안어업구조 개선사업은 1963년 연안어업 등 진흥법에 의해 3단계로 30여년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 즉, 1차 연안어업구조의 개선사업은 1961년부터 9년간, 2차 연안어업구조 개선사업은 1970년부터 10년간, 3차의 신 연안어업구조 개선사업은 1979년

부터 11년간에 걸치는 장기계획으로서 현재까지 8년간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이를 평가한 후 그 대책이 보완되어 1988년부터 계속 6년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선사업의 목표를 해당사업별로 살펴보면, 1차 구조개선사업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2차 구조개선사업은 생산성향상과 경영근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3차의 신 연안어업구조개선사업은 자원관리형·배양형어업의 추진과 활력있는 어촌의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후기대책사업은 마리노베이션 등 주변지역과 관련산업과의 종합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소어업구조 개선사업이다. 그것은 1967년 중소어업진흥특별조치법과 1976년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에 의거 경영안정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정책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을 두고 있었다.

- ① 경영합리화대책 어선의 성력화·성에너지화, 어업경영의 다각화, 기업합병 등 경영조직화
- ② 가격·유통대책 생산조정, 가공·저장·운송대책, 소비확대 수출입 대책 등
- ③ 어업노동관계 근대화 대책 임금제도,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개선, 어업노동자의 기술훈련 및 교육 등

이를 위하여 1976년 어업재건정비특별조치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 지원을 하게 되었다.

- ① 경영이 곤란한 중소어업자가 경영재건을 위하여 고정부채를 정리토록 하는 어업경영유지 안전자금의 지원,
- ② 경영규모확대, 협업화, 재무구조개선, 어선시설합리화 등 구조개선을 위한 어업경영설비 재건자금의 지원,
- ③ 국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감선의 경우에 특정업종단체에 어업경영재건 정비자금을 중점 지원했다.

이러한 구조개선정책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연안어업구조 개선정책은 경영정책과 생산정책의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경영정책과 유통·가격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연안어업 구조개선 목표를 기업화에 둘 것인가, 가족적 경영의 육성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연안어업의 기업화는 불가능하므로 양식업과 일부 연안어업은 기업적 경영으로 육성하되, 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감안, 생산성이 높은 건전한 중핵어가의 육성에도 주력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촌의 겸업소득장려는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업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되, 입지조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겸업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했다고 한다.

4. 수산금융정책

일본의 수산금융제도는 융자제도와 보증제도로 크게 나누어지며, 융자제도는 장기신용은

행, 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상호은행, 신용금고 등에 의한 일반금융과 농림중앙금고와 신용어업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어업조합조직을 통한 계통금융 및 농림어업금융금고와 개발은행을 통한 재정금융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계통금융의 자금원천은 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한 농협의 여유자금, 연안어가의 저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금융면에서는 연안어업이 중소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별 용자잔고의 구성비(Share)를 보면 1965년에는 일반금융기관이 47%, 계통금융기관이 43%, 정부금융기관이 10%였으나 1985년에는 일반 30%, 계통 53%, 정부 17%로서 계통·정부금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表 26> 참조).

<表 26> 金融機關別 融資 殘高 (單位: 億圓, %)

區分 \ 年度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漁業性融資殘高	4,762	8,561	17,052	27,887	28,926
一般金融機關	2,259(47)	3,261(38)	4,946(29)	7,540(27)	8,654(30)
系統金融機關	2,041(43)	4,230(49)	9,805(57)	15,751(56)	15,297(53)
政府金融機關	462(10)	1,070(13)	2,301(14)	4,596(17)	4,973(17)

資料: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계통금융기관별 용자잔고를 보면 1985년에 1조 5천 297억엔에 달하며 그것은 1965년에 비하여 약 7배로 증가하고 있다(<表 27> 참조).

<表 27> 系統 金融機關 融資 殘高 (單位: 億圓)

區分 \ 年度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系統金融機關	2,041	4,230	9,805	15,751	15,297
農林中央金庫	1,429	2,242	4,456	5,762	4,940
信用漁協機連合會	465	1,464	3,876	7,786	8,281
漁協	147	524	1,473	2,203	2,076

資料: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 信漁連의 殘高는 貸出金과 農林中金으로부터의 借入金을 차감하고 난 殘高이다.

* 漁協의 殘高는 貸付金과 信漁連으로부터의 信用事業借入金을 차감하고 난 殘高이다.

1980년 이후는 용자잔고가 어업생산액을 상회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1965년 이후 증가되는 설비투자에 대한 용자는 1985년에는 둔화되고 있던 것이 반대로 1965년 이후에는 감소경향에 있으며, 운전자금에 대한 용자는 1985년에 증대되고 있다(<表 28> 참조).

<表 28> 漁業性 總融資 殘高비 (單位: 億圓, %)

區分 \ 年度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設備投資性	1,862(39)	3,848(45)	8,411(49)	14,906(53)	13,872(48)
運轉資金性	2,900(61)	4,713(55)	8,641(51)	12,981(47)	15,052(52)
漁業性融資殘高	4,762	8,561	17,052	27,887	28,926
中小, 沿岸漁業性	3,244	6,605	14,241	24,065	25,631
大規模漁業性	1,518	1,956	2,811	3,822	3,293

資料: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융자보증법에 의하여 어업신용기금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의 보증제도를 제보험제로 하여 어업신용기금협회의 리스크를 중앙어업신용기금협회의 보험제도속에 포함시켜 버렸다.

어업신용기금협회(기금협회)는 都道府縣, 어협 및 동연합회에서 중소기업자가 회원이 되어 출자를 받고, 都道府縣의 출자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거기에서는 자금종류별로 상이한 일정 보증료를 받고 중소기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보증도 한다. 이때 회원이 융통한 자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협회에서 대리변제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기금협회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보증채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특별회계와 보증보험을 체결했으나, 1974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수법인인 중앙어업신용기금을 설립하여 보증보험을 인수하였다.

중앙어업신용기금협회(중앙기금)은 중앙정부, 기금협회, 농림중앙금고가 출자를 하고 자금종류 및 기관별로 상이한 일정보험료를 받고 기금협회의 채무보증에 따른 보험을 받는다. 아울러 기금협회에서는 보증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한다. 기금협회가 보증채무의 대리변제를 금융기관에 한 경우에는 중앙기금을 보험사고로 간주하여 약정된 보험금을 기금협회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기금협회의 보증잔고와 대리변제액이 급증하여 1978년부터 중앙기금의 보증보험수지는 적자로 전환하여 융자보증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융자보증제도 이외에 일본에서는 고도성장하에서 어업경영이 호조였을 때부터 인적보증이 일반화되어 왔다. 일본 중소기업의 많은 경영체가 차입금을 증가해 나가면서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는 상호 인적보증으로 연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던 점에 있다³⁷⁾.

곧 일본의 수산금융정책의 흐름을 보면, 1950년대 부흥기에는 식료증산을 목표로 농림어업 금융공고법에 의한 재정자금의 투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장기저리의 설비자금의 원활한 공급에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어업근대화자금조성법이 정책의 기둥이 되었고, 1970년대 이후의 200해리시대에서는 어업경영의 악화와 더불어 중장기 저리 운영자금의 공급이라는 방향전환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어업채진정비특별조치법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겠다.

또 수산정책자금은 두종류로 나누어진다. 즉 재정자금을 원금으로 하는 농림어업 금융공고자금 및 연안어업 개선자금과 조합계통자금 및 민간자금을 원금으로 하는 어업근대화자금과 긴급융자자금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농림어업 금융공고자금은 어항자금, 어선자금을 비롯한 민간은행이 공급하기 어려운 설비자금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연안어업개선자금은 어업기술도입에

37)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p. 154.

필요한 경영개선자금과 주거시설개선, 고령자활동비 등 생활개선자금과 연수교육비, 어업경영준비금 등 후계자양성자금의 세가지 자금으로 되어 있다. 한편 어업근대화자금은 어선·어구·양식시설, 수산물처리저장·가공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7종류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고, 긴급융자자금으로서는 경영안정자금, 유류대책자금, 국제규제관련자금, 구조재편자금, 경영재건자금 등을 시기에 맞춰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表 29~32> 참조).

<表 29> 農林漁業金融公庫의 漁業貸出 實績(決定額) (單位: 百萬円)

區分 \ 年度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沿岸漁業構造改善	2,553	2,340	8,242	15,590	14,508
過疎地域經營改善	—	—	923	1,203	648
漁業經營再建整備	—	—	—	56,173	33,122
中小漁業經營改善	—	12,829	20,438	—	—
漁港	296	616	3,342	3,597	3,461
漁場整備	—	—	—	2,545	2,273
漁船	7,937	12,529	18,219	14,254	5,548
共同利用施設	346	135	938	671	350
主務大臣指定施設	211	698	4,375	7,719	4,420
水産加工機連合會	—	—	—	5,183	1,131
沿岸漁業經營安定	1	—	1,571	4,511	1,373
合計	11,343	29,147	58,048	111,446	66,834

資料: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表 30> 漁業近代化資金의 用途別 融資狀況 (單位: 百萬円)

區分 \ 年度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89년
融資對象額(a)	25,000	85,000	125,000	125,000	125,000
貸付額(b)	24,239	68,730	88,878	68,710	82,078
20톤未滿漁船	9,524	32,187	40,733	31,318	38,254
20톤以上漁船	5,441	12,645	12,186	6,270	5,502
養殖用施設	2,671	3,188	5,958	5,455	4,741
加工用施設	1,158	3,383	5,913	6,737	9,137
漁具 등 其他施設	1,598	6,616	9,506	5,637	10,638
共同利用施設	3,695	5,593	4,851	3,607	5,835
養殖種苗·育成	—	5,118	9,731	9,666	7,971
消化率(b/a)	97.0%	80.9%	71.1%	5,762	65.6%

資料: 農林水産省, 「農林水産金融의 動向」.

<表 31> 緊急資金의 融資實積 推移 (單位: 億円)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①	576	525	64	258	192	224	116	108	165	97	42
②	584	—	—	282	472	885	585	272	233	198	—
③	—	—	125	38	—	22	7	5	—	18	36
④	—	—	—	—	—	—	66	242	177	106	12
⑤	—	—	—	—	—	—	—	—	—	—	127

資料: 新海洋時代漁業, 1988, p. 280.

註) ① = 經營安定資金, ② = 燃油對策資金, ③ = 國際規制關聯資金, ④ = 構造再編資金, ⑤ = 經營再建資金.

<表 32> 沿岸漁業 改善資金 貸付 實積 (單位: 百萬円)

區分	年度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計		2,328	3,637	4,256	4,345	4,336	4,548	4,715	4,554	4,911
經營改善資金		1,638	2,871	3,551	3,680	3,906	4,160	4,396	4,335	4,767
生活改善資金		383	516	429	400	247	217	175	129	91
後繼者養成資金		307	250	276	225	183	171	144	90	53

資料: 農林水産省, 「農林水産金融의 動向」.

일본에 있어서 수산금융정책의 목표는 첫째, 수산정책수행을 위한 자금의 공급과, 둘째,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어업금융의 원활화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어업정책수행을 위한 자금공급에 대하여 경영이 순조로울 경우에는 용자에 의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리한 시책의 강행이 어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영이 불안정한 어업에 있어서는 용자에 의한 정책수행에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② 중소어업금융의 원활화에 대하여는 자금의 양적 투입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계층간 자금지원의 편재문제의 해결도 필요하다고 하겠다³⁸⁾.

그리고 여기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중소어업의 범위가 극히 넓기 때문에 정책금융도 타산베이스에 의해 위험이 적은 상층경영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5. 유통·가격정책

유통·가격정책은 물류의 원활한 유통, 거래의 원활화, 수급조절의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경영의 안정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중소어업자의 경영악화에 대처하는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가격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수산물가격안정대책에 있어서는 다확성 어류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중소어업의 경영이 어가의 폭락으로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漁業生産調整組合法(1961)에 의한 생산조정대책과 魚價安定基金法(1961) 및 財團法人魚價安定基金(1967)에 의한 조정보관 사업을 들 수 있다. 둘째, 유통합리화대책으로서는 생산지시장의 유통가공시설을 기능적으로 정비해서 어획물의 원활한 처리와 적절한 가격형성을 기하는 산지유통의 합리화대책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어항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해 온 산지유통센터 형성사업과 소비지 운송대책, 도매시장 정비대책, 수산물 가격정보 수집사업 등이 있다. 셋째, 수산물무역대책에 있어서도 과당경쟁과 덤핑수출로 중소수산업자의 경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수출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954)에 의한 수출자율규제대책과 수입으로 인한 중소수산업자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입제한품목의 운용 및 쿼탈할당제도, 수입급증품목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수입사전확인제도, 수입수량에 따라 2단계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할당제도 등이 있다.

38) 水産廳, 漁業金融, 1960, pp. 160~162.

6. 어업재해보상제도

어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보상, 공직구제제도의 일환으로서 중소어업자의 상호구제를 기초로 해서 어업공제 및 보험의 형태로 어업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중소어업자의 어업재생산의 저해방지 및 어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어업재해보상법 1조).

동제도는 1957년부터 1963년까지의 7년간 시험실시결과 불충분한 면이 많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 등 정치적 과정을 거쳐 1964년 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됨으로써 실시·정착되게 되었다. 동법은 1967년 정부의 보험사업의 창설, 1974년 의무가입제의 도입, 1982년 보편적 가입의 촉진 및 어업실태에 맞는 개선조치등에 의하여 많은 개정이 있었다.

동제도의 구성은, ① 都道府縣을 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하는 어업공제사업과, ②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연합회가 하는 어업관계재공제사업, ③ 정부가 하는 어업공제보험사업의 세가지로 되어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처음에는 공제금 또는 재공제금의 대부분을 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어업공제기금이 설립되어 있다가 1982년 중소어업융자보증법에 의하여 중앙어업신용기금이 그 업무를 계승하고 있다.

어업공제사업에는 다음 4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 ① 어획공제 : 흉어로 인하여 어획금액이 감소하여 공제한도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 ② 양식공제 : 양식수산동식물이 사망하거나 양식시설의 유실 등의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
- ③ 어구공제 : 조업중에 어구의 손괴, 멸실 등의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
- ④ 특정공제사업 : 1974년부터 시험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김양식업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곧 김양식업의 생산금액이 공제한도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생산량이 기준생산량에 달하지 못한 경우, 양식시설의 손해 등의 경우에 그 손실·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表 33> 참조).

<表 33> 漁業共濟事業 實績(1964年~1988年) (單位: 億円)

	漁獲	養殖	漁具	特定事業	合計
契約共濟金額	2,480.3	1,184.6	32.5	30.1	3,726.6
共濟掛金額(A)	113.4	72.3	2.5	1.8	190
支拂共濟金(B)	139.1	76.5	2.6	2.6	220.8
事業收支(A-B)	-25.6	-4.1	-0.1	-0.7	-30.5
損害率(B/A)	123%	106%	105%	139%	116%

資料 : 水産廳, 「水産統計指標」.

동제도의 문제점으로서 공제수지상황의 악화를 들 수 있다. 1964~1976년사이의 통산공제수지는 전체적으로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1977년 이후 공제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어 1988년까지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어획공제는 1980

년 이후 계속해서 적자가 되어 있다. 그 반면 양식공제는 1982년 이후, 어구공제는 1980년 이후, 그 수지가 각각 흑자로 전환되어 있다. 특정공제는 2~3년 간격으로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 변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일본의 어업공제사업은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업공제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연구와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세계 수산업의 첨단(top)을 달리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의 수산업의 성장을 산업발전, 수산경제, 수산경영, 수산정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산업의 산업 그 자체의 발전방향을 추적하기 위하여, 우선 수산업의 정의(difinition)를 재검토하였다. 어업발전을 추적하기 위해 어업발전의 한계와 제약요인인 수산자원 관리, 어업노동력의 확보, 해양환경 등을 분석한 바, 일본의 어업은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의 양식어업은 재배어업을 통하여 해양개발의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었고, 수산가공업은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등 종합적인 식품산업의 방향으로 각각 침투·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식어업 및 수산가공업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일본 수산업은 한계산업으로서의 어업과는 달리 발전지향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수산경제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고도경제생활에 따른 소비생활의 변화, 즉 수요측면에서의 변화와 200해리시대의 공급체제의 변화를 살펴본 뒤 수산물 수급의 원활한 균형이 중심과제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산물 수입의 증대, 수산물 유통구조의 변화, 수산물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셋째, 수산경영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수산경영체를 영세업(어가어업), 기업(중소수산기업, 대형수산기업)으로 분류하고 그 경영의 특징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3~5톤, 5~10톤의 어선어가어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중소어업에 있어서는 경영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그리고 대형수산기업에 대해서는 탈어업화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각각 고찰하였다.

넷째, 수산정책이 생산정책으로부터 경영정책으로 전환되어 나오고 있음을 파악하고, 경영정책의 관점에서 어업구조개선정책, 수산금융정책, 유통가격정책, 어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수산업을 산업의 본질적인 면에서, 또 산업여건인 거시적인 수산 경제면에서,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미시적인 수산경영면에서, 그리고 산업정책면에서 보면 정부의

수산정책은 수산경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상호 톱니처럼 맞물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廣吉勝治, “水産物貿易構造 現状の展望”, 漁業經濟研究, 34卷, 1, 2號, 1989.
- 捲川虎三, 水産經濟學, 恒星閣, 1933.
- 農村水産省, 農林水産金融の動向.
- 農林水産省, 漁業經濟調査報告.
- 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
- 小野征一郎, 起死海生, 日本經濟評論社, 1990.
- 水産廳, 水産年鑑.
- 水産廳, 漁業金融, 1960.
- 水産廳, 漁業. 養殖業生産統計年報, 水産統計指標.
- 新川傳助, 水産經濟研究, 恒星社恒星閣, 1968.
- 新井昭一, 海洋開發と漁業の諸問題, 大成出版社, 1975.
- 伊豆川淺吉(共), 水産經營學, 恒星社恒星閣, 1966.
- 21世紀の水産を考る會, 魚價安定への未來戰略, 成山堂, 1989.
- 長谷川彰, 日本漁業の造, 農林統計協會, 1981.
- 長谷川彰(共),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 長谷川彰, “資源管理型漁業の論理とタイプ”, 漁業經濟研究, 33卷, 2, 3號, 1989.
- 長谷川章 監修, 漁業管理研究, 成山堂, 1991.
- 週刊東洋經濟, 會社四季報, 各社有價證券報告書.
- 週刊東洋經濟, 日本企業 Group, 海外進出企業總覽, 1981.
- 中盾興, 明日と日本水産業, 海文堂出版社, 1978.
- 川崎健(共), 200海里時代と日本の水産, 恒星社恒星閣, 1981.
- 清光昭夫(共), 水産政策論, 恒星社厚生閣, 1987.
- 八木庸夫, 漁家經營論, 北斗書房, 1979.
- 平澤豊, 「水産資源の有効利用」, 1976.
- 平澤豊, 水産讀本, 東洋經濟新報社, 1979.
- 平澤豊, 日本の漁業, 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 平澤豊, 資源管理型漁業へ移行, 北斗書房, 1986.
- 河井知康, 魚21世紀へのプログラム, 農産漁村文化協會, 1986.
- 海老原宏(共), 現代水産經濟論, 北斗書房, 1982.
- 海洋産業研究會, 海洋開發の産業活動, 鹿兒島研究所出版, 1973.